

## - 2026년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-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신기술 제품의 우선구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기업 공공조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『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기술개발 인증지원』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4. 23.

###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#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울산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※ 예산범위 내 지원, 종된사업장 제외
- 지원조건 : 공고일 기준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연내 취득가능한 중소기업 ※ (2026년 획득건에 대해 소급적용)
  - 제품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 보유(자사제품, B2C 제품)
- 지원내용 : 인증획득 또는 시험비 실비의 80%(부가가치세 제외)
- 지원한도 : 분야별 중복신청 허용 최대 2건 (단, 각 분야 한도액의 합계 초과 불가)
  - (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) 3개사, 기업당 10백만원 이내
  - (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, 시험비 지원) 12개사, 기업당 5백만원 이내

#### □ 지원분야

- 기술개발제품 인증 13개 분야

연번	유형	인증기관	연번	유형	인증기관
1	성능인증(EPC)	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	8	혁신제품(FT2)	조달청 등 2개부처
2	우수조달물품지정	조달청	9	녹색기술제품	한국산업기술진흥원
3	신제품 인증(NEP)	국가기술표준원	10	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	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
4	신기술 인증(NET)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10개 기관	11	산업융합품목	
5	우수 소프트웨어 인증(GS)	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기관	12	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기관
6	우수조달공동상표	조달청	13	재난안전제품인증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7	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	한국상하수도협회			

○ 조달가점, 법정 의무인증, 시험비 분야

구분	유형
법정 의무인증	KC(국가통합인증)
조달가점(법정)	KS(한국산업표준), 환경표지(친환경), GR(우수재활용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HACCP, GMP
조달가점(민간자율)	K마크, Q마크
시험비	KOLAS 인증기관 등(시험성적서)

□ 추진 일정

구분	일정	주요 내용	비고
기업모집	~ 5.14.(목)	참가기업 모집	
선정평가위원회	5월 중	15개사 선정	선정 공고
기업별 인증획득	1월 ~ 10월	기업별 기술개발 인증획득 추진	기획득 소급적용
중간점검	8월 ~ 9월	기업방문 인증진척관리, 애로사항 접수	
지원금 지급	5월 ~ 11월	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	익월 지급
완료보고	11월	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등 완료 보고	

□ 모집 개요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5. 14.(목), 18시까지
- 신청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
  - ※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,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 발급해야 하며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 결격 및 지원제외
- 신청조건 : 제품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 보유(자사제품, B2C 제품)기업
- 신청방법 : 울산통상지원시스템(www.ultrade.kr) 온라인 신청
- 신청서류 : 필수서류 미제출 시 1차 보완요청 후 미이행 시 요건 결격, 지원불가

구분	신청 유의사항	신청기관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</li> <li>-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(재무제표, 수출실적 등) 갱신(필수)</li> <li>※ 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대체자료</li> <li>- 재무제표 →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</li> <li>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→ 대표자의 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-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→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li> <li>◦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: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작성</li> <li>- 사업 신청내용(분야별 중복신청 가능, 최대 2건), 담당자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</li> </ul>	<a href="http://www.ultrade.kr">www.ultrade.kr</a>

구분	제출서류(※ 유효기간 내 또는 발급후 1개월 이내만 인정)	발급기관
필수 서류	① 자가진단표	서식 1
	② 지원신청서	서식 2
	③ 추진계획서	서식 3
	④ 기업(개인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	서식 4
	⑤ 성실의무 이행서약서	서식 5
	⑥ 사업자등록증명원	
	⑦ 최근 3개월분 <u>울산사업장</u>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<a href="#">홈택스 및 정부24</a>
	⑧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·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<a href="#">홈택스 및 정부24</a>
	⑨ 최근 2개년도(2024, 2025) 표준재무제표증명	<a href="#">홈택스 및 정부24</a>
	⑩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(신청일 기준)	<a href="#">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</a>
보유시	⑪ 다수공급자계약(MAS), 나라장터, 벤처나라, 이음장터 등록 확인서류	
미제출시 0점처리	⑫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(제품·품질·성능인증 및 규격인증)	유효기간 내
	⑬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(등록)	유효기간 내
가점	⑭ 여성장애인기업, 모범장수기업,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확인서	유효기간 내
인증획득 관련증빙	⑮ 지출증빙서류(최종견적서,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)	2026년
	⑯ 인증서	인증 획득기업
	⑰ 인증 세부 산출 견적서(※ 견적상세내역이 누락된 경우 무효처리)	획득예정기업
추가서류	◦ 컨설팅 수행 계약서, 컨설팅 수행인력 프로필(※ 경력증명서, 자격증)	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이용시
	◦ 컨설팅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(업태 및 종목 : 경영컨설팅, 기술지도)	
	◦ 컨설팅 수행기업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·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

## □ 지원제외
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◦ 불건전, 사행성, 단순 유통기업(도·소매, 무역업), 금융·보험, 부동산·건설, 전문서비스(변호사, 변리사, 세무사 등) 영위기업
◦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, 공공행정(사회보장, 보건·교육) 영위기업
◦ 정부·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
◦ 선정 후 폐업·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◦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(단, 공고일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)
◦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·변조, 신청서가 허위,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
◦ 현재 휴·폐업,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,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
◦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파산·화의·법인회생·개인회생절차·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(기업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</li> <li>○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○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법령 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컨설팅기업을 사용한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, 규격, 수량,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예) 알루미늄 가공 → HACCP 인증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, 국세·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</li> </ul>

※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,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

## □ 변경 및 지원금 포기

### ○ 변경신청

- 신청기한 : 2026.9.30.(수) (인증항목, 비용, 컨설팅 기업 등 변경사항 발생 즉시)
- 신청방법 : 변경신청서(소정양식) 및 변경관련 증빙서류 제출
- 승인통보 : 변경신청서 접수 후 사유 및 증빙 적격 시 공문통보

### ○ 지원금 포기

- 신청기한 : 제한항목에 해당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선정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즉시

- 신청방법 : 지원금 포기신청서(소정양식) 제출

※ 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도포기에 관한 패널티 제외

- 후보기업 : 선정기업의 포기 및 지원 잔액 발생 시 순차 선정 및 지원

## □ 중간점검

○ 기 간 : 2026. 7월 ~ 8월

○ 점검대상 :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선정기업

○ 점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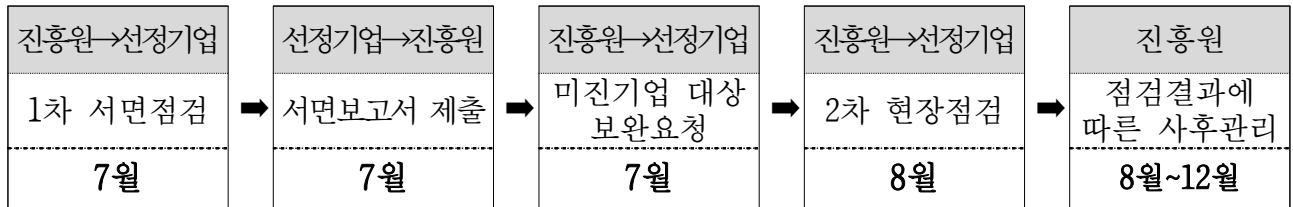
- 1차 서면점검(7월) : 중간보고서를 통한 인증획득 진척도 및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

- 2차 현장점검(8월) : 보완 필요 기업 대상 담당자 대면 미진사유 확인

- 점검결과 : '정상추진', '보완필요', '주의/경고' 구분 관리

- 사후관리 : 미비사항 시정 권고 후 보완된 기업에 한해 지속 지원여부 판단

○ 점검절차



○ 제출서류

제출서류 (※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)	비 고
① 중간점검 보고서	서식
②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·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정부24

## □ 지원금 지급

○ 지급절차 : 지원금 신청 → 서류 검토 → 지원금 지급(익월 20일 이내)

○ 신청기한 : 2026. 12. 10.(목) 까지

○ 제출서류 :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준용

제출서류 (※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)	비 고
① 지원금 신청서(서식 1)      ② 완료보고서(서식 2)	공통 제출
③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     ④ 만족도 조사지(서식 3)	
⑤ 신청기업 통장사본      ⑥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
⑦ 지출증빙자료 (직접사용, 용역사 사용)	선정기업  컨설팅 기업
- 직접사용시 : 최종견적서,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	
- 컨설팅이용시 : 사업자등록증(업태 및 업종 : 경영컨설팅, 기술지도) 컨설팅 기업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
계약서(과업 범위, 계약기간, 용역비 총액) 및 최종견적서(세부 견적 내용 포함)	
컨설팅 수행인력 프로필(컨설턴트 경력증명서, 자격증)	
컨설팅 결과보고서, 현장지도 일지, 시험 결과보고서와 기타 결과물(성과물 등) 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증(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이체)	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자 정보 기재 오류 및 담당자변경 등 기업의 정보제공 누락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서 감수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로 요건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
-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, 현장 점검 등에 협조하고, 보완요청을 미이행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심사 및 선정단계에서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최초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과 최종 선정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
- 신청 당시 선정되었어도 향후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선정 후 대표자 변경 또는 구속 시, 사업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심사위원회 구성, 신청자 평점 등 평가 관련 사항은 일체 공개 되지 않음
- 변경신청 없이 선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완료 및 집행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
- 기타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해석함

## □ 문의처

소속	부서	전자우편	연락처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	hjkwon@ubpi.or.kr	052-283-7141

참고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: 기술개발 인증 지원사업 제외 업종 1부  
 불임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: 기술개발인증 지원 서식집 1부. 끝.

참 고

기술개발 인증 지원사업 제외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(42131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,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(42492),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(424)은 지원 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 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22 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 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)
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